

연구논문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계보학과 공공성의 문제*

이 문 수**

- I. 머리말
- II. 국가 합리성(raison d'état)과 내치: 신민으로서의 주체
- III. 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주체
- IV.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주체
- V. 신자유주의에서 공공성은 해체되었는가?
- VI. 맺음말

〈요약〉

본 논문은 통치성과 주체형성 사이의 문제를 계보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양의 중세시대를 사는 개인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만 하는 양떼 가운데 한 마리라는 의미로서만 주체가 된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 영원한 복종을 통해서 중세의 주체는 형성된다. 국가 합리성이 지배적 통치성이 되는 내치국가에서의 개인들은 군주의 법적 권위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하고, 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구의 총체적 감시, 감독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내치국가에서 개인이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은 법적인 의미로 왕의 신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유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존재로 자신의 주체를 구성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존재들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체념하거나 포기하라는 요청을 어디에서도 받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할 것을 요구 받는다.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통치성이 되는 20세기 후반부터 개인들은 단순한 시장 행위자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자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삶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주체로 재구성된다. 여기서 본 논문은 Wendy Brown의 작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신자유주의가 공공성을 형제화시킨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개념은 Foucault가 말하는 비판이다. Foucault는 비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당연해 보이는 현재를 낯설고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고, 현재가 지금과 같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통치성, 신자유주의, 공공성]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 S1A5A2A01927634).

** 대구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mslee@cu.ac.kr)

1. 머리말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Stuart Hall은 Alan O'Shea와 같이 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민이 아니라) 고객으로 보도록 설득당한다면” 이것은 사회복지국가의 소멸을 재촉하는 것이다(Hall and O'Shea 2013: 9). 행정 서비스는 고객으로서의 시민의 만족을 추구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정부정책은 Hall이 보기에는 단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려는 시도만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들의 주체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가 통치되는 방식의 근간을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신자유주의로 전환시키려는 거대한 변화의 일부분인 것이다(Clarke et al. 2007; Newman and Clarke, 2009). 여기서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경제적 이데올로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 자신, 가족, 집단, 사회, 그리고 국가를 보는 관점에 대하여 새로운 “상식(common-sense)”을 암암리에 고착화시키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어느 곳에서든 인간들과 제도들을 재구성하는 현실 원칙(reality principle)”, 즉 정교한 상식을 통해서 통치한다(Brown, 2015: 35).

신자유주의를 연구하는 가장 탁월한 연구자 중 하나인 David Harvey 역시, 비록 그의 연구가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상부구조의 관계에서 전자를 중시하는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데올로기로서의 상식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 “어떠한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 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 가치, 본능, 직관에 호소할 수 있는 개념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일 때 그 개념적 장치는 당연시되고 의문에 붙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식이 되는 것이다(Harvey, 2007: 5).”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단지 한 시대를 풍미하는 경제이론 또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1930년대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시작하여 1960년대의 미국 시카고학파의 인적자본이론을 거치면서 20세기 후반에서 현재까지를 지배하는, 자유주의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통치성(통치 합리성)으로 본 학자는 아마도 Michel Foucault가 처음일 것이다. Foucault는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 주체의 신자유주의적 주체로의 변화를 신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효과로 보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과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발전하는 것이다(서동진, 2011; 석승혜, 201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 스스로 공

직자는 기업가로, 시민은 고객으로, 저항집단은 이해관계자로 규정하는 것은 주체의 재형성을 통해서 정부행정 안에 들어있는 정치적, 민주주의적, 공화주의적 전통을 의도적으로 억압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기술 관료적 지배를 고착화시키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행정학자의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은 공·사 영역의 구분을 기초로 통치했던 자유주의와 다르게 신자유주의는 공적 영역을 사적 합리성으로 초토화시키다시피 하면서 공적영역을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위에서 기술한 문제점에 기초하여 통치성과 주체형성과의 관계를 계보학적으로¹⁾ 분석하고,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공적 가치를 어떻게 훼손시키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oucault에 따르면 사람들의 품행(conduct)을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 유도하려는 의식적 노력으로서의 통치(government)는 서양에서는 16세기 중반이후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개념이다. 그 후 통치 개념은 국가 합리성-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이상, 이념, 합리성과 더불어 각각의 시대에 적합한 주체를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들은 각각의 시대의 통치목적과 방식을 상식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통치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기술, 실천, 전략과 전술, 그리고 제도적 배치 등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하였다.

Foucault가 수행한 연구에 기초하여 통치성과 주체의 변화, 그리고 현재 공공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보는 이유는 단지 학문적인 호기심에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본 논문의 진정한 목적은 Foucault(2010: 21)가 말하는 “현재의 존재론(ontology of the present)”, “우리 자신의 존재론(ontology of ourselves)”를 계보학적 연구를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의 또 다른 초점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우리 주체를 어떻게 변경시키면서 공공성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놓이게 된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주체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공공성을 어떤 방식으로 사적 영역으로 흡수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전 시대

1) 계보학적(genealogical) 연구는 역사적 연구와는 다른 것이다. 계보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 담론들, 또 수많은 다른 우연적인 요소들의 결합이 새로운 개념들, 주체들, 궁극적으로는 인식론적 격자들(epistemological grids)을 탄생시키면서 사회적, 문화적 실천이 변화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각각의 시대, 예를 들어 중상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시대는 그 시대만의 특정한 인식론적 격자, Foucault의 말로는 ‘에피스테메(episteme)’를 지니는 것이며, 이 에피스테메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무엇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이고, 인식되고, 말해지는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Foucault의 계보학에 대해서는 Lightboy(2011), Koopman(2013)을 참고.

의 통치보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공공성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더 많은 지면이 할애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II. 국가 합리성(raison d'état)과 내치: 신민으로서의 주체

1. 통치성으로서의 국가 합리성

중세시대는 통치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그 개인의 영혼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사목적 통치였다. 목자와 양 떼의 비유로 잘 알려진 유대교에서 발전한 사목적 통치는 기독교에서 더욱 정교해지면서, 속죄나 고백, 고해를 매개로 개인을 내면적으로 다스리는 사목적 권력으로 발전했다. 중세에 개인을 주체화시킨 것은 종교 권력이었고 개인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만 하는 양 떼 가운데 한 마리라는 의미로서만 주체가 된다.²⁾ 복종을 위한 복종,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 영원한 복종, “복종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복종” 이것이 바로 Foucault(2011: 253)가 보는 중세시대를 살았던 주체의 모습이다.

Foucault(2011: 227-30)는 중세의 ‘영혼에 대한 통치’에서 ‘사람에 대한 통치’로의 역사적 전환을 15세기와 16세기의 정치적, 종교적 대결에서 찾는다. 종교 개혁과 반개혁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종교전쟁에 따른 사회적 혼란 아래에서 사람들의 일상생활, 자녀양육, 결혼제도 등 올바른 행동과 질서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당시에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통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약화된 봉건세력과 교회권력으로부터 더욱 자율적이 된 주권국가일 수밖에 없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새롭게 배열된 주권국가의 당면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통치의 범위나 목적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치를 정당화시키고 또 그것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논리 즉 합리성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통치 합리성을 Foucault(2011: 108-9)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이

2) 다음과 같은 중세시대 사목적에 대한 Foucault의 정의는 이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의 나이 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은 그의 삶의 시작에서 끝까지 교회에 의해 통치 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자신을 맡겨야 한다. 즉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전체적이고, 꼼꼼하고, 세밀한 복종으로 결합되어 있는 누군가에 의한 통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Foucault, 2007: 43).

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 절대주의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등장한 개념으로 “국가 합리성(raison d'état)”³⁾은 위의 두 가지 문제를 당시로서는 혁명적으로⁴⁾ 해결하는 개념적 도구의 역할을 한다. 즉, 국가 합리성을 통해서 통치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또 이를 반성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합리성이 새로운 지식의 형성과 더불어 체계화된다.

주권자로서의 군주와 그의 신민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신에 의한 통치의 연장선의 일부분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이와 같이 전례 없던 정치적 공간에서 군주는 신민들의 구원(salvation)이 아닌 통치의 독자적인 목적을 설정해야 했고, 사목적 인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통치기술을 발명해내야만 했다. 국가 합리성은 통치의 합리성을 국가 외부가 아니라 철저히 국가 내부에서 찾으려 했다. Foucault는 이점에서 Machiavelli 역시 근대적 사유보다는 중세적 사유와 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Machiavelli는 국가 자체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군주와 그의 이해와 열정을 통치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Machiavelli의 전반적 분석은 무엇이 군주와 국가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유지시켜주는 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 합리성이 제기하는 문제는 국가 자체의 본질과 존재인 것이다”(Foucault, 2001: 316).

국가 합리성이라는 개념 속에는 적절하고 올바른 통치는 전적으로 특정한 방식의 이성적 사유(reasoning)에 기초해야 한다는 당위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성적 사유가 합리성을 지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국가 또는 통일적 존재로서의 국가의 변형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⁵⁾ 이는 국가가 운영되는 기준이 국가 외부 특히 신이나 자연이 부여하는 어떤 보편적 원리에 있지 않고 국가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 합리성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가 통일성 있게 존재하고 유지되는 데 필요

3) raison d'état는 주로 국가이성으로 번역되곤 했다. 그러나 raison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와 Foucault의 의도를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합리성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4) Foucault는 국가 합리성의 혁명적 성격을 중세를 지배했던 Thomas Aquinas의 통치에 대한 사유와 대조시키면서 말하고 있다. Aquinas에 따르면 인민에 대한 군주의 지배는 신, 자연,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만 정당화된다. 즉 군주는 신으로부터 자연을 거쳐 가족으로 연장되는 신학적-우주론적 통치에 한 부분으로 참여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Aquinas의 주장에 의거한다면 군주가 인민을 통치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특별하게 정치적인 것도 아닌 것이다(Foucault, 2011: 323).

5) Foucault(2011)는 1978년의 강연에서 국가 합리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한다. 첫 번째는 중상주의, 두 번째는 내치국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럽의 균형이다. 본 논문은 이 가운데 주체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내치만을 다룰 것이다.

충분한 것, 국가가 손상을 입었을 때 이 통일성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 충분한 것을 스스로 찾아내는 일”이다(Foucault, 2011: 352). 그럼 국가의 무엇이 국가의 통일성을 최고의 가치로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과거에는 국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개인적 행복, 구원, 영광 등이 이제는 국가 안에서, 국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힘의 증가가 통치 합리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2. 내치(Polizei)와 주체형성

17~18세기에 등장한 국가 합리성이라는 통치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치기술, 통치실천이 필요해졌다. 이 때 등장하는 개념이 지금은 경찰이라는 의미로 한정적으로 쓰이는 ‘Polizei(police)’라는 개념이다. 의미나 역할로 보았을 때 당시의 Polizei는 경찰이라기보다는 행정 또는 내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Foucault, 2011: 422-3).⁶⁾ 그 이유는 당시 Polizei는 치안이나 안전을 확보한다는 국한된 의미를 지니는 개념이 아니라 국부의 증진과 더불어 국민 하나하나의 건강과 복지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만들어진다. 국가 합리성을 통치 합리성으로 내세우는 소위 ‘내치국가(Polizeistaat)’가 국민 각자의 행복의 증진 자체를 목표로 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하는 것은 내치국가에서 국민 각자의 행복과 번영은 그 자체로는 국부와 국력의 증진을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국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란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그 힘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서만 국민 각자의 복지의 향상이 국가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국가를 강하게 만든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되는 개인의 복지의 향상은 따라서 개인의 내적, 외적 생활에 대한 국가의 치밀하고 엄격한 간섭을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치는 개인의 삶, 죽음, 노동, 도덕성 등을 그 자체 의미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국가의 부나 군사력에 얼마만큼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여를 하는가라는 기준에서 보게 된다.

개인에 대한 내치의 간섭의 범위는 거의 무한정한 것이다. 계몽군주이던 프리시아의 Frederick William 1세는 1727년 Halle와 Frankfurt 대학에 내치학(Polizeiwissenschaft)을

6) 본 논문에서는 Foucault의 강의에 대한 국내 번역본의 예에 따라 내치를 번역어로 사용한다.

체계화시킨 행정학의 효시라고도 일컬어지는 관방학(cameralism) 전공을 설치해서 국민 생활에 대하여 거의 무한정하게 확장하는 국가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문가를 양성하려 하였다. 당시 관방학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 개인들의 종교, 도덕, 안전, 보건, 농경법 등에서부터 도시계획, 세무, 회계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행정학과는 비교할 수 없이 광범위한 내용을 섭렵하고 있다(Foucault, 2011: 431).

내치는 중세시대의 통치와는 다르게 신의 섭리라고 생각되는 자연적 과정이 그대로 전개되는 것을 부정하면서, 세상의 일들은 모두 인위적인 것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⁷⁾ 그리고 내치에 의한 국민생활에 대한 간섭은 특별한 범위와 경계를 두고 있지 않았다. “내치의 대상은 거의 무한한 대상이다”(Foucault, 2012: 28). 따라서 내치의 역사적 의미는 그것이 지니고 있었던 인위성, 광범위한 일반성 그리고 불확정성에 있을듯하다. 이와 같이 국가가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개입이 목표나 대상에 있어서 거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은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무한정한 내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변하는 것은, 그래서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이 태동하는 18세기 후반이 되면서이다. 따라서 중상주의, 국가 간의 힘의 균형, 내치국가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17~18세기 서양세계에서의 개인은 군주가 대표하는 국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희생, 봉사해야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국가 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가 물론 존재했었다. 이는 당시에 내치의 상위에는 보다 중요한, 자연법으로 대표되는 법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Foucault, 2011: 458-9).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고등법원과, 개신교도들, 귀족들이, 또 영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부르주아지와 종교적 반체제인사들이 무한히 확장하려는 내치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자 했었다. Foucault 역시 이 모든 저항들이 대부분 사법적 성찰과 법규, 법률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7)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Foucault의 진술은 인위적 통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숙고된 방식으로 통치를 확보해주는 국가 합리성의 특수한 활동이 모든 지점, 매 순간 모든 장소에 없다면,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들의 악의로 인해 국가 내에서는 아무것도 지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Foucault, 2011: 354-355).

비록 국가 합리성이 내치국가로 정식화되고 표현됐으며, 내치국가 내에서 구현됐다 할지라도 또 국가 합리성이 무제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6~17세기에는 국가 합리성을 제한하려는 부단한 시도가 있었고, 이 제한과 원칙 그리고 그 제한의 이유를 법률적 이유에서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Foucault, 2012: 31).

여기서 우리는 국가 합리성 시대의 주체는 오로지 자연법 또는 관습법으로 대표되는 법률에 의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oucault는 겉으로 보면 무제한의 힘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할 것 같은 내치국가도 사법제도나 대항품성(counter-conduct)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그 도전들이 모두 국가 합리성의 외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즉, 국가 합리성에 기초한 내치국가 안에는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기제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적 통치가 권력 스스로에 의한 내부적 통제를 통해서 작동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점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저항 공간이 존재했었을 지라도 당시의 주체는 다음에 볼 자유주의에서 관찰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개인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서, 국가의 부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정도에서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국가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적 담론을 이용하거나 폭력을 종종 수반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대항품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내치국가의 주체는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통제와 이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기구들 사이의 접점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III. 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주체

자유주의적 통치성은 내치의 무제한적인 통치에 대한 비판에서 출현한다.⁸⁾ 그리

8) Foucault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하나의 정치철학 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의 강의요지에 그가 자유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잘 요약되어 있다. “나는 자유주의를 하나의 실천으로서 분석하려고 했다. 즉 몇몇 목표를 향한 부단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스스로를 조정하는 행동방식으로서의 자유주의를 분석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자유주의는 이때 통치의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원리이자 방법으로서 분석되어야만 하는 것이 된다”(Foucault, 2012: 436).

고 그 비판의 핵심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원칙이 더 이상 17세기의 자연법과 같이 통치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작동되는 시장에 대한 믿음이다. 시장이 국가의 간섭 없이 작동된다면 그것은 가능한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될 때 국부는 극대화된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통치는 국가 합리성과 내치를 특징짓는 국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 기술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단절의 동인은 통치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로부터 자유주의적 통치에서의 개인들은 국가에 봉사하는 단순한 신민이라는 주체에서 탈피하여 통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필수적인 동반자의 지위를 획득한다. 즉, 자유주의적 통치는 통치 받는 개인의 행위에, 좀 더 풀어 말하면, 개인들의 합리적 이익추구 행위에 기초해서만 가능해진다.

1. 진리형성 장소로서의 시장

Foucault가 자유주의적 통치를 말하면서 독창적으로 주장하는 점은 이때부터 올바른 통치의 기준이 초월적인 규범이나 국부의 증가가 아니라 과학적 탐구에 기초한 진리에 놓인다는 사실에 있다. 이제부터 통치는 그것이 국민 전체가 누리는 효용을 증진시키는가, 얼마만큼 증진시키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Foucault(2012: 61)에 따르면, 이와 같이 통치의 의미가 바뀌는 것은 시장이 “진실진술의 장(site of veridiction)”으로 등장하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시장의 지위는 크게 달라진다. 시장은 주권적 권력의 장소에서 진리의 장소로, 규범적 대상에서 진리의 대상으로 지위가 바뀐다. 중세시대에 시장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당연시되는 영역이었다. 정의가 실현되는 장소로서의 시장 안에는 정말로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가 존재했었다. 거래되는 물건의 종류,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그 물건의 원산지, 교환의 절차, 그리고 가격에 엄격한 규제가 존재했었다. 가격의 규제는 특히 심했는데, 그 이유는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은 반드시 공정가격(fair price)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공정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드는데 드는 노동의 양과 질, 그리고 판매자와 수요자의 요구들이다. 그리고 시장은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시장에의 참여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었다. 중세 시장의 이와 같은 사회적, 도덕적 특징을 간파한 학자는 Karl

Polanyi이다.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귀 기울일 만한 것이다.

시작부터 이 제도(시장)는 시장의 활동 측면에서 오는 간섭으로부터 사회 안에 있는 경제적 조직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안전장치로 둘러싸여 있었다 [...] 도시들이 시장에 기원을 두는 한, 도시들은 이 시장들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시장들이 인근 시골로 확장하여 현존하는 사회의 경제적 조직들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수단이기도 하였다(Polanyi, 2001: 65).

그러나 중세시대에 시장이 갖고 있던 이와 같은 법률적, 규범적, 사회적 기능들은 18세기 중반에 오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시장은 진리(상품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형성되는 공간이 된다. 먼저 시장은 자연적(natural)인 질서를 따르는 메커니즘으로 변한다.⁹⁾ 따라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연을 거역하는 활동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자연적 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이 아무런 간섭 없이 전개되도록 해야만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의 가격 역시 자연적인 것이 된다. 중농주의자들은 이런 가격을 “적정한(proper)” 가격, 또는 “정상(normal)” 가격이라고 부르고 있다(Foucault, 2012: 59). 이렇게 되면서 그 전에 가격이 지니고 있었던 배분적 정의에 대한 고려는 없어지고, 공정한(fair) 가격이라는 말은 종교적 냄새를 피우는 진부한 것이 된다. 간섭 없이 자유롭게 전개되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만이 “진실한(true)”한 것이 되면서 시장은 진리가 발견되는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진리가 발견되는 한 정부는 그것을 존중해줄 수밖에 없다. 진리를 거역할 수 있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이제 시장은 자신만의 특별한 합리성으로 지배받는 장소가 되었다. 시장이 변할 수 없는 법칙의 지배를 받는 자연적 질서가 되고,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가격이 진리라고 간주될 때 자유주의적 통치의 기초는 이미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9) 국가 합리성에 기초한 내치국가는 자연주의를 부정하면서 가능했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중세시대의 자연주의로의 회귀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자유주의에서의 자연은, Foucault(2011: 473)에 따르면, “세계의 본성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자연 자체의 과정들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관계에 존재하는 특수한 자연성, 즉 인간들이 함께 살거나 같이 있거나 교환하거나 노동하거나 생산하거나 할 때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바에 존재하는 특수한 자연성”을 말한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와 이를 형성하는 과정을 자연적이며 자발적인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2.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시장

이성과 지혜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들이 젊었을 때의 소박한 꿈과 순수함을 희생하면서 보다 편리한 삶을 추구하려고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이 결코 그 인간에게 보다 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Adam Smith는 간파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불편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Smith는 “허영과 탐욕스러운 욕망”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 사는 이론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거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서 자원을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Smith가 보고 있는 점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다. 이 때 Smith의 논리에는 신학적 사유가 깊이 배어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온 문장 뒤, 얼마 안 있어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면 그의 신학적 사유는 명백해진다. “섭리(providence)에 의해서 지구가 몇몇 지주 지배자들에게 나뉘어졌을 때라도 그것은(섭리는) 이 분배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포기하거나 잊지 않았다. 배제된 이들도 그들이 산출한 것의 일정 부분을 즐길 수 있었다(de Beistegui, 2018: 54에서 인용)”

인간의 이기심은 중세시대만 해도 타락한 인간 본성의 특징으로,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싸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Smith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진리의 담론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인간 심성이 되었고, 동시에 통치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도구가 되었다. 이기심은 이제부터 인간 본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 되는 것이다.

시장이 진리의 공간이 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모든 개인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자연적일뿐더러 도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18세기 중반의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David Hume(2000: 266)은 “이성은 열정(passion)의 노예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공동체 성립의 기초를 인간이 지니는 주관적 이기심에 두고 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Hume은 또한 사람들은 생활의 일상적 행동에서 공공의 이익까지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때 Hume이 드는 이유는 공익을 추구하려는 동기 자체가 인간의 심성에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고, 또 숭고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Hume이 보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숭고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공익추구 행위 자체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열정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람일 뿐이다(Wolin, 2004: 399-400).

이기심(self-interest) 자체를 모든 인간들을 이해하고 또 통치하는 원칙으로 정립한 사람은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를 썼다고 알려진 James Steuart이다. Steuart는 인간의 이기심이 인간행동의 보편적 원천이라고 말한다. 이는 물리적 세계가 운동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구성한 세계 역시 이기심이라는 나뭇잎의 법칙에 종속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통치와 행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Steuart의 주장은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귀담아 들을만한 것이다. “(정치인들이) 사회를 통치하고 계획에 따라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공익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들의 이익에 가장 충실한 행정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 사적인 이익이 아닌 다른 원칙에 따라서 공공의 일에 순수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아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de Beistegui, 2018: 49-50). 덧붙여 Steuart는 만일 공익추구 정신이 개인적 이기심을 대체하는 행동의 원천이 된다면 그 사회는 곧 스스로 타락(spoil)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3. 자유주의적 통치성

시장이 진리형성의 공간이 되면서 정부는 더 이상 주권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제부터는 시장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합리성을 스스로 이해하고 또 이를 실현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서양의 중세시대의 통치자는 과연 내가 도덕적 규범, 자연적 질서, 또는 신의 의지에 기초해서 통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었다. 16~17세기가 되면서 통치자는 과연 내가 국가의 부나 군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통치자들은 가만히 두면 자연적 균형과 모두의 번영으로 이끄는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을 방해하는 필요 없는 개입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묻게 된다.

18세기 중반 영국의 정치가 Robert Walpole은 “평온하게 존재하는 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Foucault, 2012: 20). Foucault가 인용한 위의 말에서 우리는 그의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핵심을 마주칠 수 있다. 그것은 진리가 말해지는 장소로서의 시장이 자유롭게 존재하도록 정부는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통치하고 있는지를 항상 의심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19세기부터 이상적 정부로 간주되는 절약하는(frugal) 정부, 값싼(cheap) 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통치에 대한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이어진 생각 속에는 인간이 좋은 삶(good life)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세속적 욕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욕망에 대하여 항상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Foucault(2011: 117)는 중농주의자들의 주장을 대비시킨다. “문제는 (통치자들이) 어떻게 ‘돼’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욕망에 대하여 ‘예’라고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에서의 좋은 통치란 개인들의 이기심, 자기연민, 자만심 등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항상 ‘예’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놓여진다. 문제는 더 이상 이것은 정당한 욕망이고 저것은 불합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개인의 관점에서 최대의 욕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있다. 문제는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나 목적이 지니는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개인이나 전체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결정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을 만드는가에 놓이게 된다. 이제부터 경제학은 욕망에 대한 과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Jeremy Bentham의 이론적 도움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효용(utility)에 대한 다음과 같은 Bentham의 정의는 아직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다. “문제시 되는 이익이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가 하는 경향에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행동이라도 이를 승인 또는 부인하는 원칙이 효용의 원칙이다”(Fuller, 1987: 718에서 인용). Bentham에게 효용의 증가는 바로 행복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효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쾌락에서 고통을 빼면 바로 효용이 나오게 된다. 쾌락과 고통은 Bentham에 따르면 “자연이 인류에게 부여한” 그래서 그것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두개의 군림하는 지배자(two sovereign masters)”인 것이다(Schofield, 2006: 29).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자연적”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정부도 그 자연을 거역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통치 이성 역시 쾌락과 고통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들의 이해(interest)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인간들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게임에 당사자가 아닌 심판으로 개입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경쟁하는 이해관계를 중립적 관점에서 관리해나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개인들의 사적인 이해관계는 정부의 활동의 한계를 정하면서 동시에 정부활동의 가능성의 조건도 만들어낸다. 그 이유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유롭게 전개되는 자연적, 자발적 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을 지키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유주의적 통치는 모든 인간을 시장에서 거래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규율화 시키는 작업 역시 수행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Foucault(1995)가 지금은 고전이 된 「Discipline and Punish」에서 강조했듯이 자유주의에서의 규율화 작업 또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했던 파놉티콘(Panopticon) 패러다임을 모범으로 삼는다. 지금은 널리 알려진 예로서의 파놉티콘은 1790년대에 Bentham이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고안한 모델로서, 형무소뿐만 아니라 학교, 공장 등에서 사람들을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공간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주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의미도 바꾸게 한다. 18세기 중반 Beccaria의 주장으로 유명해진 이 주제는 범죄를 꼭 처벌해야 하는가, 처벌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나타나는 효과와 비교해서 합리적인가, 처벌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이익의 균형은 어떠한가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Foucault, 2012: 248-50). 범죄자 또는 범죄를 저지를지를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합리적 계산을 하면서 행동하는 존재로 보는 이 관점은 - 물론 후에 타당성이 의심받게 되지만 - 범죄의 발각을 통해 치를 비용과 범죄에서 나오는 개인적 이익을 생각해서 처벌 수준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파놉티콘 형태로 만들어진 형무소도 바로 이와 같은 경제적 고려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감시”인 것이다. 이때 비용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생각하는 비용이다. 파놉티콘 형태의 형무소는 “seeing without being seen”을 가능하게 하면서 감시의 시선을 수감자의 내면에 심어놓는다(Jacobs and Heracleous, 2001). 이는 사회의 정치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영역에서 개인이 최대한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행위와 사회 곳곳에 사람들을 규율, 통제, 감시하려는 시설들이 설치되는 것은 전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적 통치의 역설은 바로 사람들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유가 항상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에서 나온다.¹⁰⁾

10) 여기서 자유주의적 통치가 별다른 저항 없이 대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과연 자유주의적 통치는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의 작동으로만 실현되는가? 결론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서부터 사회의 구성구석까지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그저 상상의 구성물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시장의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합리적 계산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또 하다못해 줄을 서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그들의 신체는 일정부분 규율화 되어야 한다. 또 시장에서 행위자들의 행위는 일정부분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같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적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학

4. 자유주의적 주체: 교환할 수 없는 욕망과 이익을 지닌 주체

내치국가에서의 인민들은 군주의 법적 권위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하고, 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구의 총체적 감시, 감독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내치국가에서 개인이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은 법적인 의미로 군주의 신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내치국가에서의 신민은 “법적 주체(homo-juridicus)”로 나타난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 자유주의 국가에서 출현하는 주체는 시민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경제적 주체(Homo-oeconomicus)”이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이 두 주체는 전혀 다른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에 있다. 법률적 주체는 체념과 포기를 받아들이는 주체이다. 이들은 사회계약에서 보듯이 제한적인 실증적 권리를 위해서 자신이 천부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연권의 일부를 포기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경제적 주체는 이익의 주체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체념하거나 포기하라는 요청을 어디에서도 받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할 것을 권장 받는다. 시장과 (사회)계약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Foucault(2012: 381)는 (시장과 계약)은 “서로 이질적인 두 구조”라고 말할 수 있었다.

법률적인 권리나 의무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개인의 이익은 타협이나 교환을 거부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법률적 주체와 경제적 주체는 상이한 형태의 정치적 주체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 말은 두 주체는 그들을 지배하는 권력에 대하여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진다는 의미이다. 이 두 주체는 권력을 상이한 인식들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 경제적 주체는 계약을 그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이 계약을

교, 감옥, 정신병원 등이 국가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Foucault(1995)는 세밀히 분석한 바 있다. 19세기 자유주의적 통치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가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자유방임의 역설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이점에 대하여 Polanyi(2001: 145)의 입장은 단호하다. “자유방임에는 하나도 자연적인 것이 없다.” 자유 시장은 결코 경제활동의 자연적인 전개에서 태동할 수 없는 것이다. Polanyi에 따르면, 1830년대와 184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장 활동을 규제하는 것들을 철폐하는 입법의 폭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 관료제로 조직화되는 국가의 행정적 기능의 급속한 증가 또한 일어났다. 현대 행정은 이와 같이 국가주도로 시장경제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출현하는 것이다. 자유방임이 하나의 목적이라면 이는 국가의 개입 없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통치성이라는 것도 비록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통치 기술일지라도 자유의 올바른(?) 활용을 강제하는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존중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Foucault(2012: 378-9)는 Hume의 예를 드는데, Hume은 Blackstone과의 논쟁에서 법률적 제도들이 이익의 주체들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이익의 주체들은 계속 존속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 주체보다 넘쳐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주체는 어느 무엇과도 교환이 안 되는 자신만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해야만 하는 존재이다. 이들은 자신이 자기 이익과 그 이익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만 동기부여 되는 주체임을 스스로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 이에 덧붙여 그들은 자유의 부여를 통해서 통치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자유와 통치의 불가분성에 대하여 Foucault(2011: 478)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제는 자유가 [...] 실제로 존중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법과 관련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적절하게 통치할 줄 모른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자유에 고유한 한계를 통치실천의 영역 내부로 통합하는 것이 이제는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유주의적 모델에서 자유는 통치성에 내재적인 원칙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주의적 통치는 자유와, 자유를 통해, 그리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실천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거나, 행사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자유의 행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하여 Jean-Jacques Rousseau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가 강제될 필요가 있다고(forced to be free)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저명한 Foucault 연구자인 Jacques Donzelot(2008: 122) 역시 자유와 통치의 연관성을 말하면서 “생산되거나 구성되지 않은 자유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IV.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주체¹¹⁾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한 변형으로도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역시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한 과도한 통치를 비판하고, 경제학적 지식의 가치를 높이 사며,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 자유를 통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위기에¹²⁾ 직면하면서 이를 내부적으로 비판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통치 합리성이란 사실이다(Foucault, 2012: 109-110).

Foucault는 Collège de France에서의 1979년 강의인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신자유주의의 기원을 전후 서독의 경제부흥을 이끌었던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와 1960년대 이후 인적자본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시카고학파에 두고 있다. Friedrich Hayek가 두 경제학파에 공통으로 소속되고 있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론적 면에서는 서로 간에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학파는 경쟁 개념이나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두 학파의 주장을 분리시켜 다루겠지만, 결론에서는 그 주장들이 하나로 수렴될 수 있다는 Foucault의 특별한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볼 것이다.

-
- 11) 학술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말할 때는 어떤 의미로 이 개념을 사용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 신자유주의는 현재 크게 보면 세 가지 관점들로부터 정의되고 있다. 첫 번째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David Harvey(2005), Duménil and Lévy(2011)의 정의이다. 이들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약화되어가던 자본가 계급의 권력의 회복과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를 목표로 한 의도적 정치적 기획이다.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이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Friedrich Hayek의 의해서 자유주의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1947년 스위스의 Mont Pèlerin에 모인 학자, 지식인, 기업인들의 집단적 지성의 결과물로 보는 관점이다(Mirowski and Plehwe, 2009; Peck, 2010). 세 번째는 본 연구가 채택하는 관점으로, Foucault의 연구를 기초로 신자유주의를 정의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자유주의는 개인들을 경제적 이해관계와 경쟁의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유도, 인도, 강제하는 규범적 통치 합리성으로 정의되고 있다.
- 12)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위기는 크게 보면 두 방향에서 등장한다. 하나는 19세기의 자유방임적 자유주의가 독점과 카르텔의 형성을 결과하면서 시장가격을 왜곡하게 되고, 이는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향은 20세기 초반의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대부분의 서양의 국가들이 부의 재분배와 완전고용의 보장과 같은 개입주의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 역시 시장에서의 개인들의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을 침해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출현과 관련해서는 Harvey(2005), Mirowski and Plehwe(2009), Dardot and Laval(2013)를 참고.

1.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Foucault는 신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와 차이가 나는 지점을 분명히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시장의 본질이란 교환, 즉 18세기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열중했던 일종의 시원적이고 허구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본질은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경쟁에 있습니다”(Foucault, 2012: 184).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경쟁은 자연적인 소여가 아니란 사실이다. 특히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 자연적 현상이라는 신조를 “순박한 자연주의(naive naturalism)”라고 부르면서 부정한다. 이러한 자연주의적 입장에 맞서 질서자유주의자들은 경쟁의 본질을 재정의 하면서 경제 질서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이들이 재정의하는 경쟁은 결코 자연현상이 될 수 없다. 경쟁은 “욕구나 본능이나 행동양식 등 자연적인 작용의 결과 따위가” 결코 아닌 것이다(Foucault, 2012: 186).

Foucault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질서자유주의자들, 특히 Walter Eucken이 보이는 경제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경쟁은 관찰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 ‘형식화의 원칙’ 또는 ‘형상(形相, eidos)’이다. 이점에 대한 Foucault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자.

후설에게서 특정한 조건 없이는 형식적 구조가 직관에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본질적 경제 논리로서의 경쟁은 세심하고 인공적으로 정비된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나타나고 그 효과를 생산하게 됩니다. 즉 순수한 경쟁은 시원적 소여가 아닙니다. 경쟁은 오랜 노력의 성과일 수밖에 없고, 솔직히 말해 순수한 경쟁 상태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Foucault, 2012: 187).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도출된다. 경제에서 순수한 자유방임(laissez-faire)은 과거의 유물이다. 이제는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는 시장에 대하여 용의주도하고 능동적이고 항구적인 개입을 해야만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가의 개입은 절대로 시장의 구조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조건들에만 개입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Foucault(2012: 219)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근본적으로 모든 순간, 모든 사회적 층위의 각 지점에서 경쟁메커니즘이 조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에 개입해야만”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보편적 시장의 구성

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경쟁은 미국의 시카고학파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Foucault에게 미국식의 신자유주의를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구분시키는 핵심적 계기는 사회를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다. 질서자유주의는 ‘기업’의 형식을 사회체나 사회조직 내에서 일반화시키려한다. 그러나 기업을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회 모델로 만들려는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시도는 그들이 일련의 도덕적·문화적 가치의 회복이라고 하는 상위 규범의 아래에 놓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Foucault의 주장을 들어보자.

(도덕적·문화적 가치들은) 뜨거운 가치라 불릴 수 있고, 차가운 경쟁메커니즘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 이 기업의 도식과 함께 수행해야 할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신의 노동환경, 삶의 시간, 부부생활, 가족, 자연환경과 관련해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질서자유주의자들이 꿈꾸는 기업사회란 시장을 위한 사회이자 시장에 대항하는 사회입니다. 시장을 향하도록 만들어진 사회이자 시장에 의해서 야기되는 가치나 생활에 관련된 효과들을 벌충하는 사회인 셈이죠(Foucault, 2012: 336-7).

그러나 미국의 시카고학파의 인적자본이론은 개인의 사적, 가족적, 공동체적 생활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공공 행정이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 모두를 경제화(economization)시켜서 경쟁이 일상화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Foucault(2012: 338)의 말대로, “완전하고 망라적인 급진성”을 지닌 이론이다. 즉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경쟁이 곁할 수 있는 사회 파괴적 효과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Foucault 자신이 개인의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삶의 모든 영역이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경제적 계산논리에 종속되는 것을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더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시장 모델을 “이제까지 경제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없었던, 사실상 경제적이지 않다고 여겨졌던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정당화시켰는가다(Foucault, 2012: 307). 그 근거는 Adam Smith와 Karl Marx의 경제이론을 동시에 아래에서부터 전도시키는 그들의 급진적인 인적자본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Adam Smith적 유형의 경제 분석은 20세기 초반까지도 주어진 사회구조의 내부에서 생산의 메커니즘, 교환의 메커니즘, 소비라는 사실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 세 메커니즘의 상호간섭이라는 관점에서 말이다

(Foucault, 2012: 313). 그러나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생산이나 교환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경제적 행위자 자신, 또는 그의 행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분석의 영역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경제학은 이제부터라도 경제적 영역을 포함해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되는 다른 모든 영역들, 예를 들어 자녀교육, 결혼,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 곳에서의 인간행동의 형태, 인간행동의 내적 합리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Foucault는 시카고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Theodore Schultz와 Gary Becker의 이론들을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한다. 인적자본이론은 재화나 서비스가 판매되는 상품시장이나 임금을 위해 노동력을 파는 노동시장을 중심에 놓고 이론을 전개하지 않는다. 대신 경제적 행위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석의 중심에 놓는다. Foucault의 생각에, 임금에서 소득으로 분석이 옮겨가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임금이 아닌) 소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노동자를 보게 되면 그가 받는 임금이란 단지 자본의 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Foucault의 진술을 들어 보자. “임금이 그 소득이 되는 자본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일정 정도의 임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신체적·정신적 요소들의 총체입니다 [...] 경제학적으로 분해한다면 노동자의 관점에서 노동이란 자본, 즉 능력, 경쟁력입니다”(Foucault. 2012: 317).

이렇게 되면 노동자는, Marx의 말처럼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팔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자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활용하여 소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인적자본이론에서 보았을 때 자본가와 노동자는 구조적으로나 또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존재가 아니다. 둘 다 성격이 다른 자본을 지니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만 하는 독자적 기업인 것이다. “기업이라는 단위로 구성된 경제, 기업이라는 단위로 구성된 사회”, 바로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더욱 완벽하게 성공시켜야만 하는 야심적 기획인 것이다(Foucault 2012: 319).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Foucault가 “경쟁”이나 “기업” 개념을 사용할 때 그가 진정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개인이나 조직에게 “기업” 또는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조성하는 데 신자유주의의 독자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핵심은 권력은 오로지 환경에 개입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Foucault(2012: 364)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게임 참가자들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들과

관련해 작용하는” 것으로, “개인을 내적으로 종속화 하는 유형이 아니라 환경적 유형의 개입이 행해지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의 개인들은 “현실을 수용하는 자 혹은 환경의 변수들 내에서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자”, 다른 표현으로는 “환경에 인위적으로 도입된 체계적 변화에 체계적으로 반응하는 자”로 정의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Foucault(2012: 372)는 신자유주의에서의 개인들을 “탁월하게 통치 가능한(governable) 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Foucault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신자유주의와 환경 사이의 관계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¹³⁾ 아마도 그 이유는 1979년 강의인 「생명 관리정책」에서 환경의 문제가 강의의 거의 끝에서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근래에 이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학자인 Lorenzini(2018)와 Taylan(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은 신자유주의가 구축하는 환경에 대한 Foucault의 주장에 빈 공간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람들을 지배하는 환경은 “경쟁”이나 “기업”이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되는, Lazzarato(2015)의 말대로 “무한한 빚”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다루는 데는 또 다른 논문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이정도만 지적하기로 한다.

2. 신자유주의적 주제: 기업가로서의 호모 에코노미쿠스

모든 생활 영역의 경제화를 도모하는 신자유주의는 개인들을 특정한 주체로 형성시키지 못하는 한 고유한 통치성을 발휘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개인들이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성의 규범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들은 자신들의 주체성을 자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 새롭게 형성해야만 한다. 이때 모델로 등장하는 주체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개인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신자유주의 이론들에서 상정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자유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시장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존재들이다. 이 때 국가에게는 시장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 행위를 하도록 그들을 방임할 것이 요구된다. 그

13)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문수(2019)를 참조.

러나 신자유주의에서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단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만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전개되는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미래 소득의 향상을 위해서 남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존재들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에서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기업가, 그것도 자기 자신의 기업가”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의 자본,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생산자,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소득의 원천”인 것이다(Foucault, 2012: 320).

모든 개인들을 호모에코노미쿠스로 보는 신자유주의 이론에서는, 예를 들어 범죄자 역시 자기 자신의 기업가의 관점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 점에 대하여 Foucault는 1979년 3월 21일 강의의 상당 부분을 Gary Becker의 이론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가 범죄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고찰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시카고학파의 일원인 Becker는 범죄가 왜 일어나는가를 물을 때 철저히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는 개인의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Becker가 범죄를 볼 때 그것이 사회적 해악이라는 공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범죄행위에 따른 위험과 범죄를 저지르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계산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말한다. 또 그렇게 할 때에만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해 진다고 믿고 있다.¹⁴⁾

Becker는 범죄 자체를 없애려는 노력을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체로도 비경제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 범죄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거될 확률, 범죄에 대한 죄값의 정도,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등의 변수들을 통제하면서 범죄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Becker에 따르면 어떤 사회에도 범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적절한 균형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는 그 균형점을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되는 것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업가”로서 자신의 행동이 결과하는 비용과 효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상이 될 것을 요구받는다. 그 요구는 더욱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언뜻

14) 범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범죄 자체의 반사회성, 반규범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즉 신호위반을 해서 벌금을 무는 것이나 반인륜적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나 모두 행위자들은 검거될 위험, 검거돼서 치러야 할 죄값, 범죄로 얻는 이익 등을 계산하여 행동하는 존재로서, 특별한 존재는 아닌 것이다(사토 요시유키, 2014: 62).

들으면 별것이 아닌 듯한 요구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정치적 이념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규범이나 가치를 추종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Lyotard(1984)가 말하는 “포스트모던의 조건”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자신을 정당화시키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현대인들이 보편성의 가치보다는 특수성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성을 옷차림에서부터 생활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은 후자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다문화주의, 관용의 원칙,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를 흔쾌히 받아들인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강제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과거의 자유주의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도와주는 통치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이상적이라고 보는, 개성이 충만하고 다양한 가치와 규범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Zizek(2009)이 지적하듯이, 현대의 금융자본주의, 네트워크 자본주의, 문화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끄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라는 점이다. 즉 이들은 자신의 개성이나 정체성이 자본에 의해 이미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또 다른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자유주의적 주체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다. 즉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집합적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거나, 과도한 선택의 자유를 못마땅해 하거나 회피한다. 또한 자유의 제공에 뒤따르는 경쟁의 과열, 성과의 측정 등은 개인들을 탈진시켜서, 한병철(2012)이 말하는 “피로사회”로 몰고 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Ludwig von Mises(1949: 321)가 오래전에 말했듯이, 사람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자유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오직 “강제될 때만(when forced to)”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Mises의 논리를 따른다면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개인들을 강제적 수단을 써서라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야 가능한 것이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 나온 Quinn Slobodian(2018)과 Niclas Olsen(2019)의 연구들에서 두 연구자 모두 신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을 “주권적 소비자(sovereign consumer)”로 간주하면서, 시장에서의 개인의 선택이 정치적 장에서의 투표보다도 그 개인들의 의지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주장한다고 말한다. 이는 현재를 사는 모든 개인들에게 투표나 민주주의적인 투쟁과 협상을 통해 공공의 일에 참여하는 존재인 시민이라는 주체를 버리고 소비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로 거듭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기획이 성공하게 되면 개인들은 강제적으로라도 자유로워야만 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시장에서 별생각 없이 자유롭게 하는 선택 행위 자체가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합리성에 더욱 종속될 것이다.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선택의 자유를 만끽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냉소적으로 느껴지는 중요한 이유는 이들은 경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과나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있다. 소위 자기-책임화(self-reponsibilization)라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시대적 압력이다(Shamir, 2008). 기업의 부도에 대하여 기업(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듯이 기업가로서의 개인 역시 자신의 삶의 굴곡에 대하여 온전히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나 사회에 도움을 기대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도덕률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특별한 능력이 요구된다. 그 능력을 Chadler & Reid(2016)는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취약성”으로 요약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스스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변화에 빠르고 기민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개인들이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그들이 직업에서 가지는 안정성을 탄력성, 유연성의 확보라는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며 학습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는 가운데, Wendy Brown(2015: 210-16)이 적확히 지적했듯이, 국가 또는 기업에 어려움이 닥치면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는 개인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특징이다.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위기를 초래한 금융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였고, 빚에 허덕이던 많은 사람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했지만 위기를 야기한 장본인들은 엄청난 연봉과 퇴직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

V. 신자유주의에서 공공성은 해체되었는가?

Wendy Brown의 2015년의 저서인 「Undoing Democracy」는 Foucault가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다. 여기서

Brown은 Foucault의 1979년 강의인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논지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개인이나 사회영역 전체에 대한 총체적 경제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토론과 협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공공성의 형해화를 결과한다는 것이다. Foucault에 대한 Brown의 독해의 장점은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규범적 질서” 또는 “경제적 가치, 실천 그리고 특정도구들로 이루어진 특정한 공식을 인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키려는 통치합리성”으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Brown, 2015: 31).

Brown의 주장을 참고해서 본다면, Foucault가 말하는 경제화는 단순히 삶의 많은 영역이 화폐화(monetization), 또는 시장화(marketization)된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은 시장 모델 자체를 경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면서, 모든 인간들을 경쟁만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시장 행위자로 단순화시켜 보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공공의 의지가 형성되는 자율적이며 독립적 공간으로서의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에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가 침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된다. 중국적으로는 국정운영 전반, 사법영역, 교육과 문화 분야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신자유주의적 이성은 그 자체 독특한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되고, 민주적 공공성을 경제적 합리성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이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Brown의 주장은 경청할 만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이성을 따른다면) 개인들과 국가들은 현재의 회사 모델을 기초로 이해되어야 하고, 자신들의 현재 자본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미래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으로 기대되고, 기업가주의, 자기투자 그리고(혹은) 투자를 유인하는 실천을 통해서 행동해야 한다. 다른 진로를 추구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재정적 위기, 신용등급, 통화가치, 채권등급의 하락, 적어도 정당성의 상실이 나 극단적으로는 부도나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Brown, 2015: 22).

공공성과 관련한 Brown의 주장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호모 폴리티쿠스(homo politicus)에 대한 그녀의 정의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정치와 사회의 총체적 경제화 아래서의 효과적인 저항에 대한 그녀의 회의적 시각이다. Brown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지배 아래에서는 호모 폴리티쿠스와 반대편에 위치한 신자유주의적 주체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궁극적인 승리가 필연적인 것이 된다. 그럼 호모 폴리ტი쿠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을 말하는가? Brown(2015: 86)에 따르면, 호모 폴리ტი쿠스는 “개인적 주권과 국가적 주권의 실현을 위해서 또는 이를 통해서 추동되는 피조물,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혁명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헌법을 탄생시킨 피조물, 그리고 스스로를 지배하는 주권적 개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조물”이다. 결국 Brown이 말하는 호모 폴리ტი쿠스는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주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rown은 이와 같은 정치적 피조물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을 쓸 때부터 내치국가 때까지도 이상적 인간형으로 존재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모 폴리ტი쿠스는 18세기에 들어오면서 계산에 능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 로크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공존하게 된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호모 폴리ტი쿠스가 존재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 조건, 목적 등을 총체적으로 탈취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화에 따라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과연 이론적으로나 실천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의 질곡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선 호모 폴리ტი쿠스라는 어휘 자체가 근대로 들어오면서 사용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가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조온 폴리티콘(zoon politikon)’의 의미와 호모 폴리ტი쿠스의 그것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Chambers(2018)가 자세히 논한 바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Brown이 호모 폴리ტი쿠스의 모범으로 삼는 자유주의적 시민-주체만을 과연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에 있다.

Brown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공공성을 회복시키려는 저항이 자유주의적 시민-주체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그 저항은 오로지 정치적 저항을 가져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제기되는 또 다른 의문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이나 상상력을 경제적인 것으로 각색시키기 때문에 저항 자체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그녀의 비판론이다. Brown의 주장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자유주의적 시민-주체가 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들 속에서 저항하고자 하는 욕망, Foucault(2016: 45)의 말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통치 받지 않으려는” 욕망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난망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Brown의 주장에서 우리는 그녀가 신자유주의적 권력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

을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경제화시키려는 신자유주의 권력 아래에서도 권력에 대한 저항 가능성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Brown의 책 제목이 말하듯이 인민(demos)을 제거(undone)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Foucault(1982: 790)는 통치는 오로지 자유로운 개인에게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통치는 자유로운 주체에게만 행하여지거나, 그 주체들이 “다양한 종류의 품행, 반응, 행동거지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에 놓여있을 때에만 행하여진다. 신자유주의적 통치 역시 개인의 자유를 그 가능성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통치가 아니라 단수한 지배(domination)일 뿐이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다른 통치성보다도 개인들에게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하는 정치적, 경제적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 입각해 볼 때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저항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전략 자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즉 개인에게 허용된 자유를 자본주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잃어버린 공공성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Lorenzini(2018: 5)가 말하듯이 이미 “지배와 차별에 대한 비판적 힘”에 의해서 좀 더 나은 통치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잠재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공공성 가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또한 가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위험한,” 그리고 본질적으로 “쟁의적(agonistic)” 과정이란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Chantal Mouffe(2005)와 Jacques Rancière(1999)의 작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Rancière(1999: 107-114)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공공 가치의 훼손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불화와 갈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한 영국 대처 수상의 “TINA(there is no alternative)” 수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전문가의 영향력이 시민들의 평등한 참여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화된 것이고, 마지막은 신자유주의는 항구적인 투쟁과 해결할 수 없는 논쟁으로 특징되는 정치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가 규모의 축소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신자유주의는 Foucault가 말하는 통치 합리성으로 작동하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Gramsci가 말하는 헤게모니로서도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이다.¹⁵⁾ 이는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신자유주의는 어느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상식’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현재를 옥죄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는 공공성이 제도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공공성이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제도로 변할 때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은 사라지고 그것을 Foucault가 18세기 통치의 특징으로 말하는 “내치(police)”가 대체할 것이라고 Rancière는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다. 공공성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영역은 항상 우연성과 가치 충돌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가치와 믿음이 충돌하는 상황이 지니는 불확실성과 비결정성은 공적 영역의 특징인 것이다. 이 때 민주주의적 행정은 무리한 제도 구축이 아니라 상충하는 가치나 믿음도 그것이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 한 최대한 공론의 장에서 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VI. 맺음말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그 전의 통치성들에 대해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국가가 시장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국가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9세기 자유주의에서는 시장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의 내부에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허락되는 공간이라는 지위를 얻었다면, 신자유주의에서의 국가는 전 지구적으로 기능하는 시장을 존중하고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할 때에만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서 중요한 이슈는 국가에 의해서 정의되고 통제되는 시장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있지 않다.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국가를 시장의 감시 아래에 두어서 국가 자체를 “시장국가(market state)”로 전환시키는가이다. 국가는 시장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이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 자체의 운영을 가급적 빨리 시장 논리에 종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시장은 인간이 비용과 효과를 교량해서 행동하는 사적, 공적 영역 모두로 확산되어야 한다. 자체로 어떠한 해악과도 결부되어 있지 않고 또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는 이유만으

15) Laclau(2007: 170)에 따르면 특정한 헤게모니는 권력의 빈 공간을 차지하면서 그 사회를 일시적으로나마 통합시키는 “비어있는 기표(empty signifier)”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이고 우연한 것들을 일시적이거나 상식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로도 시장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Foucault, 2012: 267-9).

신자유주의자들은 법의 의미도 변경시키려 한다. 이에 대한 Miguel Vatter의 주장을 들어 보자.

신자유주의에서 법은 더 이상 법률을 제정하는 주체로서의 시민들을 자유인(civitas)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대신에 법은 자유 선택이나 자기 이익에 대한 추구인 부정적 자유를 선호한다. 이런 사실은 주체들이 자유 시장(societas)의 자발적 질서를 구조화시키는 법률적 규범을 따르면서 서로 간에 행동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Vatter, 2014: 178).

위와 같은 진술은 공공성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법률도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시장의 규범적 힘을 증가시키는 기제로 기능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제는 법률이 인민들의 주권적 의지 또는 일반의지를 대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욱 더 많은 영역으로 시장 규범을 확산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또 다른 도구 또는 기술이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무엇보다 큰 것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Wendy Brown과 같은 학자는 신자유주의로부터의 탈출은 우리가 자유주의에서 보여준 시민-주체로 다시 복구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Foucault의 작업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을 보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Foucault는 1984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런 식으로는 통치 받지 않기 위한 기술로서의 “비판(critique)”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은 우리의 현재를 규정하는 담론이나 존재양식을 우연적인(contingent) 것, 역사적인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는 비판을 통해서 당연히 보이는 현재를 낫설고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고, 또한 현재가 어떻게 만들어졌음을 설명할 수 있음으로써 현재가 지금과 같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현재의 우리에게 대한 비판은 우리에게 부과되어있는 제한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며 동시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실험인 것이다”(Foucault, 1997: 319).

Foucault가 말하는 비판의 중심에는 통치의 전제 조건이 되는 자유를 우리가 보다 창조적으로 사용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공공성 자체를 역사의 장에서 지워버렸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공성이 시장이 진실을 말하면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던, 즉 공·사 구분이 비교적 분명했던 자유주의적 통치성에서 말하는 공공성이 아닌 것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공성은 신자유주의가 부과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개인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가 극도로 다원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각 개인의 단수성(singularity)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 하는 사회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할 때 등장하는 공공성의 내용은 공·사 구분의 이원론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모든 인간은 공동-내-존재이며 동시에 단수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사적인 삶도 공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고 반대로 공적인 삶도 그 인간의 단수성을 존중한다는 면에서는 사적인 삶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공적인 영역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선제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적인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가변적이고 우연한 것으로서 항상 “쟁의적” 민주주의에 기초해서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상태에서 창조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사토 요시유키. (2014). 「신자유주의와 권력: 자기-경영적 주체의 탄생과 소수자-되기」. 김상운 역. 서울: 후마니타스.
- 서동진. (2011). 혁신, 자율, 민주화... 그리고 경영 : 신자유주의 비판 기획으로서 푸코의 통치성 분석. 「경제와 사회」, 89: 71-104.
- 석승혜. (2015). 신자유주의시대의 주체생산과 저항가능성에 대한 연구. 「동양사회사상」, 18(4): 353-394.
- 이문수. (2019).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주체, 그리고 공공성의 문제: Foucault의 1978, 1979년 강의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5(2): 59-90.
- 한병철. (2012). 「피로사회」,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 Brown, Wendy. (2015). Undoing Democracy: Neoliberalism's Stealth Revolution. New York: Zone Books.
- Chambers, Samuel A. (2018). "Undoing Neoliberalism: Homo Oeconomicus, Homo Politicus, and the Zōon Politikon," Critical Inquiry, 44:706-732.

- Chandler, David and Julian Reid. (2016). *The Neoliberal Subject*. London: Rowman and Littlefield International.
- Clarke, John et al. (2007). *Creating Citizen Consumers: Changing Publics and Changing Public Services*. London: Sage Publications.
- de Beistegui, Miguel. (2018). *The Government of Desire: A Genealogy of the Liberal Subjec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ardot, Pierre and Christian Laval. (2013). *The New Way of the World: On Neoliberal Society*. London: Verso.
- Donzelot, Jacques. (2008). "Michel Foucault and Liberal Intelligence," Trans. G. Burchell. *Economy and Society*, 37(1): 115-134.
- Duménil, Gérard and Dominique Lévy. (2011). *The Crisis of Neoliberal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Foucault, Michel. (2016). 「비판이란 무엇인가」. 오르트망, 심세광, 전해리 역. 파주시: 동녘.
- _____. (2015).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김상운 역. 서울: 난장.
- _____. (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임세광 외 역. 서울: 난장.
- _____. (2011). 「안전, 영토, 인구」. 오르트망 역. 서울: 난장.
- _____. (2010). *The Government of Self and Others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82-1983)*. New York: Palgrave.
- _____. (2007). "What is Critique?" In Sylvère Lotringer (ed), *The Politics of Truth*. Trans. by Lysa Hochroth and Catherine Porter. Los Angeles: Semiotext(e).
- _____. (2001). "'Omnes et Singulatim': Toward a Critique of Political Reason," In James D. Faubion (ed), Trans. by Robert Hurley and Others. New York: The New Press.
- _____. (1997). "What Is Enlightenment?" In *Essential Works of Foucault 1954-1984*, vol. 1,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Trans. by Robert Hurley et al. Harmondsworth: Allen Lane/Penguin.
- _____. (1995). *Discipline and Punishment: The Birth of the Prison*. Trans. by Allen Sherida.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82). "The subject and power," *Critical Inquiry*, 8(4): 777-795.
- Fuller, Timothy. (1987). "Jeremy Bentham and James Mill," In Leo Strauss and Joseph Cropsey (eds),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ll, Stuart and Alan O'Shea. (2013). "Common-sense Neoliberalism". *Soundings*, 55(55): 9-25.
- Harvey, Davi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ume, David. (2000). *A Treatise of Human Nature*. David Fate Norton and Mary Norton (ed),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acobs, Claus and Loizos Heracleous. (2001). "Seeing Without Being Seen",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 Organization*, 31(3): 113-135.
- Koopman, Colin. (2013). *Genealogy as Critique: Foucault and the Problems of Moderni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Laclau, Ernesto. (2007). *On Populist Reason*. London: Verso
- Lazzarato, Maurizio. (2015). *Governing by Debt*. Cambridge: MIT Press.
- Lightboy, Brian. (2011). *Philosophical Genealogy, Volume I*. New York: Peter Lang.
- Lorenzini, Daniele. (2018). "Governmentality, Subjectivity, and the Neoliberal Form of Life,"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22(2): 154-166.
- Lyotard, Jean-Francois.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irowski, Philip and Dieter Plehwe. (2009). *The Road from Mon Pèlerin: The Making of the Neoliberal Thought Collectiv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von Mises, Ludwig. (1949). *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ouffe, Chantal. (2005). *The Return of the Political*. London: Verso.
- Newman, Janer and John Clarke. (2009). *Publics, Politics and Power: Rethinking the Public in Public Services*. Los Angeles: Sage.
- Olsen, Niklas. (2019). *The Sovereign Consumer: A New Intellectual History of Neoliberalism*.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 Peck, Jamie. (2010). *Construction of Neoliberal Rea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olanyi, Karl. (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 Rancière, Jacque. (1999). *Disagreement: Politics and Philosophy*.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chofield, Philip. (2006). *Utility and Democracy: The Political Thought of Jeremy Benth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hamir, Ronen. (2008). "The Age of Responsibilization: On Market-Embedded Morality," *Economy and Society*, 37(1): 1-19.
- Slobodian, Quinn. (2018). *Globalists: The End of Empire and the Birth of Neoliberal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Taylan, Ferhat. (2017). "Mesopolitics: Foucault, Environmental Governmentality and the History

of the Anthropocene,” In Philippe Bonditti et al. (eds), *Foucault and the Modern International: Silences and Legacies for the Study of World 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Vatter, Miguel. (2014). “Foucault and Hayek: Republican Law and Liberal Civil Society,” In Vanessa Lemm and Miguel Vatter (eds), *The Government of Life: Foucault, Biopolitics, and Neoliberalism*.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Wolin, Sheldon S. (2004). *Politics and Vision: Continuity and Innovatio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Zizek, Slavoj. (2009). *First as Tragedy then as Farce*. London: Verso.

Abstract and Key Words

The Genealogy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the Problem of Publicness

Lee, Moon-Soo

Daegu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trace the genealogical relation between governmentality and the formation of the subject. In the middle ages, individuals became the subject mainly through their incessant obligations to pastoral power for the purpose of their salvations. Within the Polizei states of the 18th century that functioned on the logic of reason of state, it was possible for individuals to become the subject only under the thorough supervision by legal sovereignties. Entering the liberal ages of the 18th century, individuals were for the first time acknowledged as having their own intangible desires and interests, thereby having a capacity of acting independently at the market place. Under the reign of neoliberalism of the late 20th century, however, individuals have been required or even forced to be the entrepreneur of themselves. As a neoliberal subject, every person should transform his/her acquired and achieved capacities into capital to be reinvested for further valorization. Accordingly, the divis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has become meaningless in the neoliberal governmentality, as almost everything that was for a long time conceived as belonging to the common or public sphere has been privatized and financialized. Against such a trend as the usurpation of the public by the private under neoliberalism,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concepts of critique or critical ethos espoused by Michel Foucault, primarily because those concepts provide us with the possibility of thinking and acting beyond the limit laid down by neoliberal governmentality.

[Key Words: Governmentality, neoliberalism, publicness]